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규칙

C2014년7월4일 제정C2020년11월18일 개정C2021년1월22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소프트웨어"라 함은 컴퓨터·통신·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.
- 2. "소프트웨어관리"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.
- 3. "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"(이하 "관리책임자"라 한다)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.
- 4. "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"(이하 "관리담당자"라 한다)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.
- 5. "불법복제"라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6. "관련문서등"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. 〈개정 2020.11.18.〉
- 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진흥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·운영하고 있거나,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관리

- **제4조 (관리책임)**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 자를 둔다.
 - ②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관리담당자는 관리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다.

제5조 (업무)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
- 2.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
- 3. 정품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

- 4.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 : 감독
-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부서별 관련문서등의 작성 〈개정 2020.11.18.〉
 - 2.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실태조사 실시
 - 3. 소프트웨어 구매, 계약체결,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
 - 4. 관련문서등의 작성·보관〈개정 2020.11.18.〉
 - 5. 원본CD,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
 - 6.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**제6조 (소프트웨어 구매 등)** ① 소프트웨어는 경영기획본부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, 진흥 원 예산 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. 〈개정 2021.1.22.〉
 - ②관리책임자는 구매 이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.
 - ③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,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**제7조 (관리대장 등의 작성)**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11.18.〉
 - ②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등을 정비하고,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11.18.〉
 -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11.18.〉
 - ④ 관련문서등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11.18.〉

제3장 점검 및 교육

- **제8조 (점검)**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,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관리책임자는 연 2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10일 이내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9조 (교육)**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은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.
 -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임·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.
- 제10조(준수사항) 진흥원 전 임·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흥원이 소유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.
 - 2.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흥원이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,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

진흥원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.

- 3.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원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.
- 4.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5.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.

부칙(개정 2014. 7. 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20. 11. 18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21.1.22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<u>소프트웨어 보유대장</u>

소프트웨어 고유번호	소프트웨어 버전	저작사	시리얼 넘버	도입시 버전	라이 센스 유형	도입 일자	보유 수량	설치 수량	라이 센스 기간	서비스 기간	운영 부서

20 년 월 일

부 서 명:

관리담당자 : (인)

관리책임자: (인)

(별지 제2호 서식)

개인(소프트웨어)별 설치현황표

부서명	사용자	PC관리번호	소프트웨어 자산 목록						
T/16	71671								
사용수량									
보유수량									
잔여수량									

20 년 월 일

부 서 명:

관리담당자 : (인)

관리책임자: (인)

(별지 제3호 서식)

소프트웨어 사용 확인서

컴퓨터고유번호	순번	소프트웨어 명칭 (버전)
	1	
	2	
	3	
	4	
	5	
	6	
	7	
	8	
	9	
	10	

상기 본인은 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,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,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또한, 진흥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PC 및 노트북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,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부 서 명:

성 명: (인)

(별지 제4호 서식)

개인(소프트웨어)별 점검현황표

부서명	사용자	PC관리번호	소프트웨어 자산 목록						
T/10	71071								
사용수량									
보유수량									
부족수량									

20	녀	웍	잌
20		2	

부 서 명:

관리담당자 : (인)

관리책임자: (인)